

보도시점 2026. 6. 2.(화) 배포 시 배포 2026. 6. 2.(화) 17:00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추진 TF, 현장 의견수렴 및 국민 제안, 실무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발굴한 104개 과제 중 30개 정상화 과제 1차 선정
- 30개 과제 신속 성과 창출 + 과제 지속 발굴을 위한 정상화 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일(화) 15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6건), ④ 부당이득 편취 우려(3건) 4개 분야 30개 정상화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를 엄정 조치한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를 신속히 개선한다.

청년농들이 부모님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도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시·군에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또한, 원산지 표시 중복 규제(배달앱-음식 포장재) 완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사업 운영 제도화(거주의무 예외 규정 마련)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

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실외사육건(마당 개) 중성화 수술 지원 방식 개선과제도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 정상화 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고령의 양육자가 직접 개를 병원에 이송하여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지원 받아야 했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이송비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자 등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중성화 지원 사업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6건)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트랙터,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타 부처 소관 법령이라도 부처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되었던 비료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적정 시비를 추진하고,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백미 → 현미 등 포함)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④ 부당이득 편취 사례 등(3건) 사전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기관 운영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설당 할당관세 도입시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한다.

그 외에도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판매업체들이 일반 시장 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 문제는 실태 조사와 함께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여러 제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차 과제 발굴 시에는 농업인 안전 분야, 관계부처 협업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전담팀(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 성과를 신속 창출하고, 2차, 3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며, “이번 계기에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를 즉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정재환 (044-201-1311)
		담당자	서기관	여종수 (044-201-1317)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오재협 (044-201-1341)
		담당자	사무관	한기연 (044-201-1387)



**참고**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리스트 (30건)**

연번	과제명	개선 내용	유형
1	농지 전수조사	·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투기 근절, 농지관리체계 확립 (전체 농지 DB 구축) 및 실효성 있는 농지제도 개선 추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2	농협 개혁	·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외부 견제 장치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선거제 개편 등 추진	
3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실효성 제고	· '25년 실태조사 결과분석 등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이 미비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속 조치하고 집중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 하반기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개정 추진 및 농업법인관리 시스템 개편을 토대로 법인 실태 상시 모니터링 추진	
4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사용 근절	· 구거 불법 점·사용 관련 실태조사* 추진, 이를 토대로 불법사항 조치, 통일된 정비기준 마련, 관리체계 구축 등 * 1차 조사(3~4월) 및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5.4~31)	
5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 공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 공매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실제 경작하는 기업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리체계 확립	
6	빈집재생민박사업 운영 제도화	· 빈집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빈집재생민박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거주 의무 예외 규정 마련 등 제도화	현실과 유리된 법령· 제도
7	농어촌민박사업 상속인 지위 승계 근거 신설	· 기존 사업자 사망시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농어촌민박사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8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허용	·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허용	
9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	· 부과율 상향, 상한액 상향, 감면율 조정 등 제도 개편하고 부담금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청년농·실경작자 농지 확보 및 영농 규모화 등에 투자	
10	행정구역 개편 시 직불금의 '농업의 주업요건' 예외 적용	· 본인 귀책 사유 없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업의 주업 요건' 적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11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운영방식 개편	· 해외 한식당 현지 평가 방식 도입, 등급제로 운영하여 한식 고급화를 위한 '최우수 한식당'과 대중적 한식당 확산을 위한 '추천 한식당'으로 구분 관리	
12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절차 개선	· 식품명인 전수자에 한해 명인 지정절차를 2개월 수준(기존 7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13	사료 원료 대마씨유 THC, CBD 성분 허용기준 등 마련	· 사료 원료 대마씨유 추출성분(THC, CBD*) 함량 기준 설정, 유해 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개선 등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14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련 중복규제 개선	·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시점에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조리음식 판매·제공시 포장재·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	
15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개선	· 포장지 표시사항 중 '농장 개수'와 '축종' 정보를 QR 코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	가칭 동물보호센터 입양속려제도 도입	· 유기·유실동물 입양 시 가정에서 임시보호(10일 이내) 후 입양 여부 결정할 수 있는 가칭입양속려제도 도입	
17	실외사육견 증성화 수술 지원 개선	· 수술비 외 이송비(교통비) 지원으로 양육자 외 동물보호단체·자원봉사자 등이 동물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외사육견 증성화 수술 지원체계 강화	
18	저수지 명칭 일원화	· 저수지 명칭 일원화 추진하고, 명칭 변경 전까지는 재난 문자 발송시 현장 명칭과 행정 명칭 병행 표기	
19	산란계 산업 규제 완화	· 산란계 케이지 복도 폭(120cm) 및 단수(12단 이하) 기준 삭제	
20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제도 개선	·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검역·방역 간 시스템 연계 및 관련 규정 개정	
21	농지은행/농업경영체 등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 농업인이 임대차 계약 완료 시 별도 방문 신청 없이 유선으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22	적정 시비 확산을 통해 농가경영 부담 완화	· 적정사용량만큼 화학비료가 투입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비료 사용체계 개선 실증지구 조성사업 신규 추진('27~), 비료 사용 가이드 안내 등 홍보 추진(SNS, 마을방송, 유튜브 홍보 등) 및 비료 판매시스템 개선 등	
23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	· 농업기술센터 외 민간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시비처방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4	복지용 쌀 백미중심 공급체계 개편 (백미 → + 현미 등)	· 복지용 정부양곡 공급체계를 현미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양곡 친환경쌀 인증 표시도 병행 추진	
25	주행형 농업기계(트랙터, 경운기 등) 음주운전 금지	· 농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주행형 농업기계를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경찰청 협의)	
26	버섯재배 분야 폐기물 규제 개선	· 버섯 생산 원료부산물 등에 대한 폐기물 규제 적용 부담 완화	
27	영농정착지원사업 독립영농 기준 완화	·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도 독립 영농으로 인정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28	설탕 할당관세 추천대상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할당관세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 대상자 요건 강화, 방출 의무기간 단축(6개월 → 4) 등 제도개선 추진	
29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시 브로커 개입 방지	·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도입·운영하여 브로커의 역할을 공공부문이 일부 흡수	
30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관행 개선	· 이중가격으로 농업기계를 판매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추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  
제도

부당  
이득  
편취